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81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서영석 · 허종식 · 김주영
이해식 · 한정애 · 소병훈
윤후덕 · 김 윤 · 박희승
이용우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 <u>년간</u>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 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 ----- ----- <u>2</u> <u>년간</u> ----- ----- -----.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 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 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u>산입하지 아니한다.</u>	③ ----- ----- ----- ----- ----- ----- ----- <u>포함하여 계산한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